

과업지시서

-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서울교육의 국제화 방향 -

2023. 3.

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



서울교육정책연구소

연구용역 과업 지시서

담당자: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박옥선 (☎ 02-311-1304)

1. 과업명: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서울교육의 국제화 방향

2. 과업 수행 기간: 계약일로부터 90일

3.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

- (다문화·다인종사회 대비) 저출산 등 사회문제와 이민·다문화시대 대비를 위한 체계적 준비 필요
- (글로벌 역량 강화) 팬데믹 등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공조의 필요성 증가로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미래역량 교육 필요성 증대
- (국제사회에서 역할) 경제·문화 등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수도교육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

4. 과업의 내용

- 국내외 다문화 및 외국인 청소년 관련 초·중등 교육정책 동향
- 서울 다문화 및 외국인 현황
- 서울 학생들의 국제학교 재학 및 유학 현황
- 초·중등교육 분야 국제화 모델 개발

5. 과업 수행 방법(연구 방법)

- 문헌 분석(선행연구 수집·분석, 통계자료, 보고서 등 조사·분석)
- 사례 분석(사업수행기관 사례 수집·분석)
- 전문가협의회(교육분야 국제협력전문가, 수행기관 관계자 등 면담)

6. 과업 이행 조건

□ 과업지시사항

○ 연구팀 구성

- 연구책임자: 대학의 조교수 이상, 전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인 자
- 공동연구원: 대학교수,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, 교직원(1인 이상 참여), 교육전문직, 교육행정직 등

※ 교원, 교육전문직, 교육행정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하며, 타 시·도 근무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로 참여 가능

□ 연구 진행 점검

○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과제담당관, 연구협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함

구 분	담 당	역 할
과제담당관	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	○ 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
연구협력관	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주무관 우효진	○ 연구 방향 및 결과, 활용 등에 대한 검토, 지도 조언 ○ 연구팀의 연구진행 확인(매월 1회) 및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지원 ○ 연구 중간보고회 및 최종평가회 참석 및 평가

위탁연구 관리 규정 제12조(연구진행상황의 점검) 연구과제별 과제담당관, 연구협력관 등을 위촉하여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□ 보고서 평가회

○ 중간 및 최종보고서 평가 실시: 총 2회

- 중간 및 최종보고서 평가회: 일정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
- 대상: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, 연구협력관, 평가위원, 교육정책연구지원단, 희망 교원 등

위탁연구 관리 규정 제15조(연구결과 평가)

- ①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중간 및 최종보고서 평가를 실시한다.
- ② 생략.
- ③ 연구책임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지정 받아 기한 내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최종 보고서 평가회는 연구종료일 7일 전까지 실시한다.

□ 최종 결과물 제출

- 최종보고서 및 연구결과 요약서
 - 제출기한: 계약 만료일까지(※ 반드시 기한 내 제출)
 - 보고서 인쇄 전 연구협력관(업무담당자)의 사전 검토 확인
 - 연구결과 요약서: 목차 앞쪽, 2쪽 분량
 - 최종보고서는 책자(30부)로 제출하되, 원본파일(한글, PDF) 동시 제출

□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

- 선급금의 요청과 관리: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연구 관리 부서에 선급금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, 연구 관리 부서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선급금 사용 계획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선급금 지급을 요청한다.
- 예산 항목 중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 50% 이내로, 협의회비는 연구비 총액 10% 이내로 집행한다.
-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31호(2023. 1. 1. 시행)의 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’을 따른다.

□ 일반 사항

-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·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, 과업 수행계획서의 수행 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과업 수행 중 당초 계획대로 연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. 단 부득이한 변경 사항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(이하 교육연구정보원)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, 연구 개발 수행에 있어서 교육연구정보원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

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,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.

-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교육연구정보원장에 귀속된다.(최종연구보고서 제출 시 ‘저작권 양도 계약서’ 제출)
- 최종 연구 개발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구 개발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·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.(단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)
- 계약 완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, 용역 기간 중에 교육연구정보원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.
- 교육연구정보원과의 협의 결과 연구 계획 또는 연구 방향, 연구(중간) 결과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교육연구정보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.
-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공개, 학술지 게재 등 대외 발표를 금지한다.
-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7. 연구 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

- 초·중등교육 분야 국제화 모델 마련
- 저출산 및 다문화·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학교 및 교육청 역할 재정립